

전주지방법원 2021. 9. 7 선고 2019가단293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재판경과

전주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1나10183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9. 7 선고 2019가단29305 판결

전문

원 고 A

피 고 B

변론종결 2021. 8. 10.

판결선고 2021. 9.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덕진구 C 대 304㎡ 중 6/8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1.

1. 10. 접수 제14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전주시 덕진구 C 대 3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78. 4. 13.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3. 11. 13. 증여를 원인으로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중 6/8지분에 관하여 2006. 10. 27. 원고의 강제경매신청으로 전주지방법원 F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2009. 6. 19.에 2007. 7. 13.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 명의의 위 6/8지분에 관하여 2010. 1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1. 1. 10.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접수 제1491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D은 원 · 피고, E 및 G, H, I, J, K 8남매의 어머니로서 2003. 12. 16. 사망하였다. 다. D이 사망한 후 H을 제외한 원 · 피고 등은 E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소송(전주지방법원 2004가단5206호)를 제기하였으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판단하에 그 청구가 기각되고, 항소 및 상고도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2001. 11.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8,0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 가압류를 마쳐둔 상태였는데, D이 사망한 후 E과 피고를 비롯한 나머지 형제자매들을 상대로 D에게 1999년에 8,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상속분(각 1/8)에 해당하는 1,000만 원씩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E에 대한 소송(전주지방법원 2005가단8158사건)에서는 원고의 대여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를 비롯한 나머지 형제자매들을 상대로 한 소송(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5가단18011호)에서는 무변론 승소 판결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5가단18011호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이 사건

토지 중 6/8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후 전주지방법원 F 강제경매사건에서 스스로 위 6/8지분을 경락받았다.

사. 이에 E은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D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없음에도 위 가압류 등기가 마쳐져 있음을 기화로 다른 형제자매들을 상대로 받은 무변론 판결에 근거하여 E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6/8지분에 관한 강제경매를 진행함으로써 E의 지분을 상실하도록 한 불법행위를 하였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전주지방법원 2010가단189호)을 제기하였고, E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2010. 6. 25. ‘원고는 E에게 43,89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8. 18. 이후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항소심(전주지방법원 2010나4991호)에서 2010. 11. 16. ‘원고는 E으로부터 3,7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으나 원고는 2010. 12. 3.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가 2011. 2. 17.에 이의신청을 취하하여 결국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6/8지분을 매도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른 등기에 필요하다며 원고를 속여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들을 도용하여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2) 피고

원고가 E과의 위 전주지방법원 2010가단189 사건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원고 대신 E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해결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넘겨주었다.

나. 판단

1)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이를 부인하고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무효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피고 명의의 등기가 아무런 원인 없이 마쳐졌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관련사건의 소송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주장처럼 원고와 피고 및 E이 위 손해배상사건의 항소심 진행 중인 2020. 12. 15.경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6/8지분을 매수하되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의 E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합의한 사실 및 그에 따라 매매대금을 37,8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부동산매수인을 피고로 적은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3) 그렇다면 피고가 위 합의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이나 E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은영